

## 『단기특별기업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단기특별기업예금 특약과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또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1 | 상품 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상품 명: 단기특별기업예금
- 상품특징: 매일 이자가 지급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2 |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가입자격	법인		
가입통화	KRW, CNY, USD, EUR		
신규가입	영업점		
계약해지	영업점		
예금기간	1일이상 일단위로 고객과 협의함		
상품유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율	매일 은행과 고객간에 개별 협의된 1일 이자율		
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은 일별 최종 잔액(예치금)을 대상으로 제 5조의 적용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계산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세금공제 후 이자지급일에 지급되며, 공제된 금액은 당일 최종잔액(예치금)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시점	이자지급일
	지난 이자지급일 (또는 입 금일)로부터 익일 0시까지	익일 0시	이자결산시점 당일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li></ul></li><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ul>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통화가 외화인 경우, 가입통화 이외의 통화로 입출금시에 적용하는 환율은 영업점에 고시한 거래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로 합니다.
- 가입통화가 외화인 경우, 인출 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02-3788-6617)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을 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